인권경영 실행지침

제정 2018. 12. 28. 개정 2020. 12. 29. 개정 2022. 12. 23. 개정 2023. 12. 28.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인권"이란「대한민국 헌법」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,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
 - 2. "임직원"이란 진흥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(비정규직 포함)을 말한다.
 - 3. "이해관계자"란 진흥원의 경영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, 업무계약자,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.
 - 4. "인권경영"이란 모든 이해관계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경영을 하며,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정치·사회·경제·문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을 지는 경영의 수행을 말하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진흥원의 모든 임직원 및 진흥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2장 인권경영 체계

- 제4조(인권경영헌장) 진흥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실천한다.
- 제5조(인권경영계획 수립) 진흥원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간 인권경영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 - 1. 인권경영의 추진 목적 및 방향
 - 2. 인권경영 추진 전략 및 과제
 - 3.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**제6조(담당부서)** 진흥원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두고 인권업무를 총괄하며,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를 담당한다.
- 제7조(인권교육) 진흥원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교육을 실시하며, 그 시기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.

제8조(인권경영 활동 지원) 진흥원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실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3장 인권경영위원회

- 제9조(설치 및 기능) ① 진흥원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권경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하다)를 둘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인권경영 제도, 정책,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 권고 또는 의견표명
 - 2.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
 - 3.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심의
 - 4. 기타 위원장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
- 제10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3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다.
 - ② 위원장은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하며,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 - 1. 인권경영 담당 부서의 팀장<개정 2023. 12. 28.>
 - 2. 인사 담당 부서의 팀장<개정 2023. 12. 28.>
 - 3. 감사 담당 부서의 팀장<개정 2023. 12. 28.>
 - 4. 노동조합 추천인
 -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 - 1.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
 - 2.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- ④ 제2항 제1호, 제2호,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, 제2항 제4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.
- 제11조(소집 및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 - ② 위원장은 매년 1회의 정기회의를 소집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.
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 - ④ 위원장은 필요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.
 -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내부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회의안건과 관련한 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⑦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.
- 제12조(비밀누설 금지)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- 제13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
 - 2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
 - 3.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 - 4.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

제4장 인권영향평가

- **제14조(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)** ① 진흥원은 기관운영,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인권경영 담당 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담당하며,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 -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5장 인권침해구제

- 제15조(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)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사람(이하 "피해자"라 한다)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.
 - ②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(이하 "인권침해행위"라 한다)의 신고 및 접수를 위한 창구(전화, 이메일, 게시판 등)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.
 - ③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조사·처리하여야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2. 신고가 익명이거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
 - 3.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
 - 4.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
 - 5.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
 - 6. 신고 사건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
 - 7. 기타 인권경영 담당 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제16조(인권침해행위의 처리) ①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, 접수 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,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, 위원장은 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심의해야 하고, 침해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- ③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심의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- 제17조(인권침해행위의 조사) ①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접수된 사건의 조사를 위해 신고인·피해자· 피신고인(이하 "당사자"라 한다) 또는 관계인에게 출석요구, 진술청취, 관련 자료 제출 요구, 자료 조회,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.
 -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.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.
 - ③ 인권경영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의 조사 기간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,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신설 2023. 12. 28.>
- 제18조(신고인의 신분보장)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알게 된 임직원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신고인의 신분이 공개되거나,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시 인권경영 담당 부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, 조사 결과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19조(시정과 조치) 진흥원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,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<2018.12.28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12.29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2.12.23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3.12.28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